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이 가이드라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장 적용시에는 분야별·기관별 업무, 상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이 가이드라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일반사항

01

- | | |
|-----------------------|----|
| 1.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 06 |
| 2. 용어 정의 및 해석 | 09 |
| [붙임] 공중이용시설 범위 | |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02

- | | |
|------------------------------|----|
|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 28 |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29 |
| 3.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63 |
|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67 |
| [붙임] 의무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03

- | | |
|-----------------------|-----|
| 1. 도로분야(국도·고속국도 등) | 70 |
| 2. 철도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 81 |
| 3. 항공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 96 |
| 4. 하천분야(하구둑·제방보) | 111 |
| 5. 건축분야(업무시설 등) | 118 |
| 6. 기타분야 | 127 |



일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2. 용어 정의 및 해석



I.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1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정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존재하였고,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안전 인력, 안전 예산** 등은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투입될 수 있으나**,
 - 종전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면서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 법 적용 시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함
-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기관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둠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부과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법인 또는 기관의 전체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예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법인 또는 기관은 22.1.27일 이후부터 24.1.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2

국토교통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마련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분야의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사항 및 적용 예시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II. 용어 정의 및 해석

1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시민재해

■ 재해 발생 요건 및 원인

-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임
 - 따라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또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 설비, 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다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 상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될 수 있음

■ 재해 발생 대상(재해자)의 범위

-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재해자의 범위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제정 목적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로 하며(법률 제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로 규정하였음(법률 제9조제2항)
- 따라서, 중대시민재해 재해자의 범위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 시민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법률 제2조제3호)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참고사항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1명 이상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함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해당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2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 하나의 사업주, 법인·기관에서 관리·통제하는 재해요인 중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당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3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2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1. 일반사항

■ 공중이용시설 개념

- 공중이용시설은 그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대상임

■ 공중이용시설 범위 (포함 또는 제외 대상)

☞ 공중이용시설의 세부 범위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 21~26p 참고

- 법률에서 위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중 대상의 **공중이용성,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대상(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함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 별표3)
 - 또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의 '그 밖에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는 **준공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토목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유원시설**로 정함
- 다만, 소상공인의 부담이나 경영책임자등의 특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등은 제외함**

분류	공중이용시설 대표 예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시설 (시행령 별표2, 22~23p)	철도역사 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시행령 별표3, 24~26p)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등 토목시설물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21p)	노래연습장, PC방(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이에 준하는 시설 (21p)	주유소, 가스충전소(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터널·철도터널·철도교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교량(20m 이상)

2. 국토교통분야 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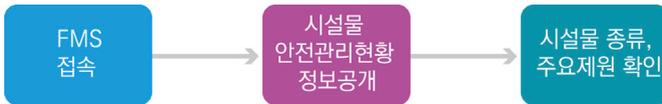
- 국토교통분야의 공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 중인 제1·2종 시설물로, (시행령 별표3, 24~26p),
 - ① 도로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② 철도시설(철도교량, 철도터널) ③ 항만시설 ④ 댐시설 ⑤ 건축물 ⑥ 하천시설 ⑦ 상하수도시설 ⑧ 옹벽 및 절토사면 등임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토목시설(시행령 제3조제4호 가목·라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도로시설 또는 철도시설'(①, ②)과 유사하며,

-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시설 중 **지하역사** 또는 **각종 여객터미널**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건축물' (㉔)과 유사하므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마련한 사항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함

4. 대상여부 확인방법

■ 시설물안전법 상 제1·2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 중이므로,
 - 제1·2종 시설물의 경우 FMS에서 **시설물의 유형과 세부 분류, 주요 제원**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s://www.fms.or.kr>

■ 도로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터널·도로교량 등)

- 「도로법」 제56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중인 도로대장에서 준공년도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연면적**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3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1. 일반사항

공중교통수단 개념

- 공중교통수단은 그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대상임
- 도시철도 차량(법을 제2조제5호 가목), 철도 차량(나목), 시외버스 차량(다목), 여객선(라목), 운송용 항공기(마목)로 구분됨

2. 국토교통분야 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분야의 공중교통수단은 ①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 ② 시외버스차량
③ 운송용 항공기임

분류	세부대상
도시철도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철도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전용철도 제외)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시외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운행계통을 정하고 중·대형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고급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시외일반버스 등이 해당
운송용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4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 사업주 (개인사업주)

■ 일반사항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이 때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2. 경영책임자 등

■ 일반사항

-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이사를 말함
 -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총괄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 공공부문 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
 - ※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포괄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5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이용수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 ①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 ③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봄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개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도록 한 사항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상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한 것임
- 종전 안전법령이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를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특히,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사항**으로 자세히 안내함

☞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 27p~68p 참고

붙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 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 터널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별표 2)】

1. 모든 지하철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향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향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별표 3)]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수도 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 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가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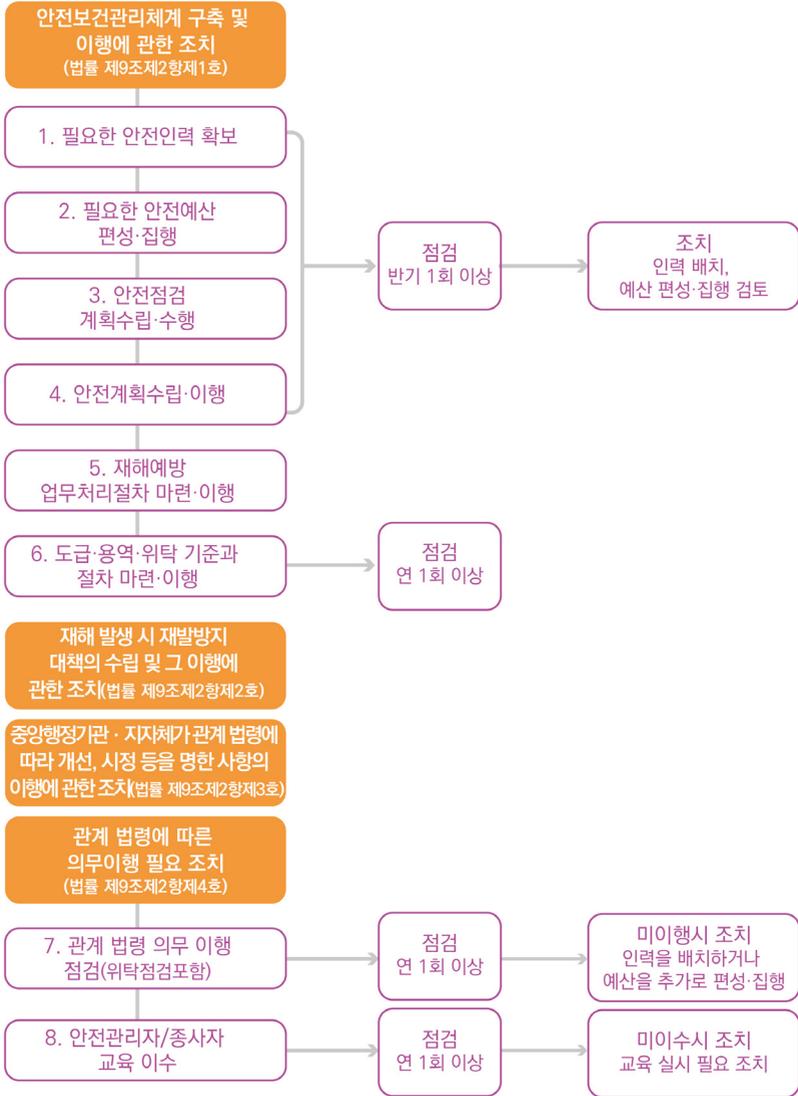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붙임] 의무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법령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운영 중인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다를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 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기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구체적으로는
 - 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②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 ③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구조체, 시설, 설비, 부품 등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
 - ④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는 법률 등을 안전·보건 관계법령으로 보고자 함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구조안전, 이용안전, 화재안전 등이 아닌 **효율적인 이용, 원활한 교통흐름,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한 성능개선** 등 부가적인 목적을 가진 법령은 일반적으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요소 외에, **안전 외 목적을 위해 부가로 설치된 부대 시설, 공작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령도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2. 공중이용시설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예시

① 도로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도로 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시설물안전법
도로 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② 철도시설

- 철도교량, 철도터널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철도 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시설물안전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철도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철도역사, 대합실 등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철도 역시설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③ **공항시설**(여객터미널) :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④ **항만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 시설물안전법, 항만법

⑤ **댐시설**(다목적, 발전용, 홍수전용댐 등) : 시설물안전법, 댐건설관리법, 저수지댐법

⑥ **건축물**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초고층재난 관리법*

*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

⑦ **하천시설**(하구둑, 제방·보) : 시설물안전법, 하천법

⑧ **상하수도시설** : 시설물안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⑨ **옹벽 및 절토사면** : 시설물안전법

분류	세부 분류	관계법령
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시설물안전법
절토 사면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2. 공중교통수단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법령

- ① 철도 분야(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 철도안전법
- ② 버스 분야(시외버스) :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 ③ 항공 분야(운송용 항공기) : 항공안전법

2 필요한 인력 확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일반사항

인력 확보 의무

-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다만,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설서에서는 확보해야 할 안전인력의 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제시함
 - 경영책임자등은 각 기업 또는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모든 경우에 인력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인력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점검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시행령 제10조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력에게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6호)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가독)

■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업무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
- ① **안전점검 업무** : 법률에서 정기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정기적인 점검 업무
 - ※ 대표 예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② **보수·보강 업무**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점검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한 보수·보강 등의 업무
 - ※ 대표 예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등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수·보강 업무
- ③ **안전조치 업무** : 법률에서 규정한 긴급안전조치, 공중이용시설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용도제한, 위험표지의 설치 등의 업무

주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인력 관련 사례는 국도·고속 국도 등 p.70, 철도시설 p.82, 철도차량 p.84, 공항시설(여객터미널) p.97, 항공기 p.98, 하구둑·제방·보 p.111, 건축물(업무시설) p.120에 제시함

3. 안전계획의 이행(나목)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점검등의 실시와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할 것
 - 안전계획의 내용을 직접 이행하는 인력, 안전계획에 포함된 항목의 이행여부와 이행정도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인력 등을 '안전계획의 이행' 관련 인력으로 볼 수 있음

4.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의 이행(다목)

■ 고시 제정 목적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가목)이나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나목) 이외에, 기업 또는 기관이 인력을 확보해야 할 대상 업무를 고시로 추가 규정
 -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지침 (안)
(국토교통부 고시는 마련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보해야 할 안전인력의 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함**
 - 경영책임자등은 기업 또는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모든 경우에 인력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인력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고시(안) 주요내용 (인력 확보 업무)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업무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로 규정 하였으므로,
-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고시로 규정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음

분야		유해·위험요인 예시	
교량	교면포장 및 데크표면 균열·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불량 • 포장손상(A) • 신축이음 파손(B) 	 
	난간/연석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A) • 누수로 인한 구조물 부식 • 난간/연석 파손(B)등 	 
터널	노면 균열·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불량 • 포장손상(A, B) 	 
	안전시설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벽, 가드레일 손상 및 결함(A) • 고정부 손상 및 전도 우려(B) 등 	 
건축물	안전시설, 구조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손상, 미설치(A) • 구조체 손상(B) 	 
	내·외부 마감재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마감손상으로 균열 발생(A) • 외부 마감재 손상(B) 	 
철도 차량	부품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부품의 과도한 마모, 탈락 등 	-

-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업무
-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장에서 대응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로 규정 하였으므로,
 -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안전조치 등 개선업무 수행인력’을 확보하도록 고시로 규정

- 교량, 터널 분야 : 노면·교면의 포장 균열·손상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이용자에게 대한 이용제한 조치 등 업무
- 철도 분야 : 철도차량 운행에 필요한 부품 탈락 등 위험요인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부품 교체 조치,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 업무

3

필요한 예산 확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일반사항

예산 편성의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이를 수행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함
 - 다만,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할 안전 예산의 규모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예산을 투입할 안전업무를 규정함
 - 경영책임자등은 각 법인·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모든 경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예산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점검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예산 편성·배치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시행령 제10조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계획된 용도대로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6호)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가목)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비용, 보수·보강 비용, 안전조치 비용, 인건비 등이 있음

- ① **안전점검 비용** : 법률에서 정기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업무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 대표 예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② **보수·보강 비용**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점검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수행토록 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비용
※ 대표 예시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등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수·보강 업무
- ③ **안전조치 비용** : 법률에서 규정한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용도제한, 위험표지의 설치 등의 비용
- ④ **인건비** :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수행하는 인력의 고용, 운영 비용
※ 그 외에 법정 안전계획의 수립, 법정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관련 예산으로 볼 수 있음

주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예산 관련 사례는 국토·고속
국도 등 p.70, 철도시설 p.82, 철도차량 p.84, 공항시설(여객터미널) p.97, 항공기 p.98,
하구둑·제방·보 p.111, 건축물(업무시설) p.120에 제시함

3. 안전계획의 이행(나목)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점검등의 실시와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안전계획의 이행여부와 정도를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안전계획의 이행'
관련 사항으로 볼 수 있음

4.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의 이행(다목)

■ 고시 제정 목적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이나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이외에, 기업 또는 기관이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할 대상
업무를 고시로 추가 규정
 -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지침 (안)
(국토교통부 고시는 마련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보해야 할 안전예산의 규모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함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을 꼭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
예산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고시(안) 주요내용 (예산 확보 업무)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로 규정 하였으므로,
-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고시로 규정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예는 다음과 같음

분야		유해·위험요인 예시	
교량	교면포장 및 테크표면 균열·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불량 • 포장손상(A) • 신축이음 파손(B) 	 
	난간/연석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A) • 누수로 인한 구조물 부식 • 난간/연석 파손(B)등 	 
터널	노면 균열·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불량 • 포장손상(A, B) 	 
	안전시설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벽, 가드레일 손상 및 결함(A) • 고정부 손상 및 전도 우려(B) 등 	 
건축물	안전시설, 구조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손상, 미설치(A) • 구조체 손상(B) 	 
	내·외부 마감재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마감손상으로 균열 발생(A) • 외부 마감재 손상(B) 	 
철도 차량	부품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부품의 과도한 마모, 탈락 등 	-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
·보수·보강 등 개선

- 교량, 터널 분야 예시 : 노면·교면의 포장 균열·손상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이용자에게 대한 이용제한 조치 등 업무
- 철도 분야 예시 : 차량운행에 필요한 부품 탈락 등 위험요인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부품 교체 조치,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 업무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 교육예시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공유 교육,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조치 등

④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 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 안전 물품 예시 : 안전표지판, 안전삼각대, 비상탈출용망치, 안전경광봉 등
- 안전 장비 예시 : 차량 차체 진단장비, 철도차량 점검 특수 해머, 차량 수리·보수 리프트 점검·교체 장비 등

⑤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비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비용을 확보하도록 규정

4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와 주기는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등급,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1. 개념

■ 안전점검의 정의

-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함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대상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점검의 계획 수립과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공중이용시설 대상별 안전점검의 예시

① 철도시설

○ 철도교량, 철도터널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철도건설법	제29조	정기점검	시설별 별도주기 결정
	제31조	정밀진단	<10년 경과 철도시설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 철도역사, 대합실 등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	•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제16조	안전진단	• 필요시

② 항만시설 (방파제, 파제제, 호안)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③ 건축물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	•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제16조	안전진단	• 필요시

4 하천시설(하구둑, 제방·보)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하천법	제13조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이상
	제74조	하천관리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6월 이전

- 그 외에 도로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필수안전점검으로 봄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3. 공중교통수단 대상별 안전점검의 예시

① 철도 분야(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정밀안전진단	• 5년 단위

② 버스 분야(시외버스 차량)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정기검사	• 1년 단위(차령 8년 이하) • 6개월 단위(차령 8년 초과)

③ 항공 분야(운송용 항공기)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항공안전법	제90조	안전운항체계 검사	• 운항시작 전

주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관련 사례는 국도·고속 국도 등 p.72, 철도시설 p.85, 철도차량 p.86, 공항시설(여객터미널) p.100, 항공기 p.100, 하구둑·제방·보 p.113, 건축물(업무시설) p.122에 제시함

5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의 형식과 내용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4.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대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이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안전계획 수립을 갈음할 수 있는 조건

-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상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대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는, 별도의 안전계획 작성 없이도 각 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 안전계획 주요 포함내용

- 안전계획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제원과 유형,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그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안전 예산·인력,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안전계획 표준(안) 예시

※ 안전계획 표준(안)은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① 하나의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 <표> 형식의 간단한 안전계획 표준(안) 활용

<안전계획 표준(안) : 단일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 기관용>

00년 안전계획					
00기관, 00년 00월					
1. 공중이용시설 개요					
공중이용시설명		소유자		(사진대지)	
관리주체		준공년도			
소재지					
공중이용시설 현황(제원 등)					
2. 안전 예산 및 인력 현황					
안전 예산	① 안전점검 비용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비용			
	② 보수·보강 비용	• 시설의 안전과 정비·점검을 위한 장비 확보비용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비용			
	③ 안전조치 비용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이용제한 등 안전조치 등 비용			
	④ 인건비	•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⑤ 기타 비용	• 그 외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 인력		•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인력			
3. 00년 추진계획 및 점검					
구분		내용	추진 일정	예산 확보여부	미확보시 조치계획
안전점검 등	정기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유지관리	관리1	(보수·보강 대상, 수량 등)			
	관리2	(보수·보강 대상, 수량 등)			

② 하나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 〈표〉 형식의 간단한 안전계획 표준(안) 활용

<안전계획 표준(안) : 단일 공중교통수단 운영·관리 기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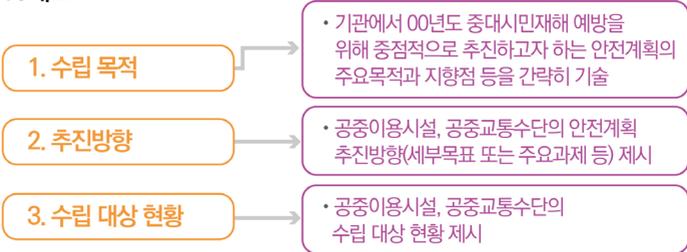
00년 안전계획					
00기관, 00년 00월					
1. 공중교통수단 개요					
공중교통수단명		소유자		(사진대지)	
관리주체		제작년도			
		승인년도			
소재지					
공중교통수단 현황(수량 등)					
2. 안전 예산 및 인력 현황					
안전 예산	① 안전점검 비용	•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비용			
	② 보수·보강 비용	• 공중교통수단의 정비, 보수·보강, 부품 교체 등 비용			
	③ 안전조치 비용	•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운행제한 등 안전조치 등 비용			
	④ 인건비	•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⑤ 기타 비용	• 그 외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력	•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인력			
3. 00년 추진계획 및 점검					
	구분	내용	추진 일정	예산 확보여부	미확보시 조치계획
안전점검 등	정기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유지관리	관리1	(보수 보강 대상, 수량 등)			
	관리2	(보수 보강 대상, 수량 등)			

- ③ 다수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 보고서 형식의 안전계획 표준(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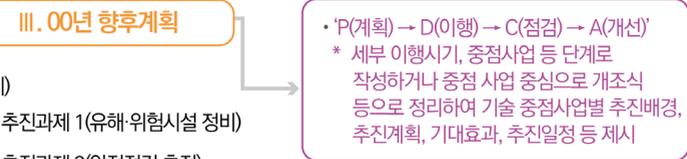
<안전계획 표준(안) : 다수 대중교통수단 운영·관리 기관용>

안전계획 목차(안)

I. 개요



II. 00년 안전관리현황 및 추진계획



(예시)

- 1 추진과제 1(유해·위험시설 정비)
- 2 추진과제 2(안전점검 추진)
- 3 추진과제 3(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시행) 등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 하는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시설물 안전분야, 안전예산현황, 안전전담조직 및 역할, 안전인력현황등의 내용을 활용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6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 업무처리절차의 형식과 내용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 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기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1.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경영책임자 등이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또는 매뉴얼 등을 마련토록 함
 - 이는 경영책임자 등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수·보강 등 조치를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보다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 또는 조치요구하여, 보수·보강이 적절히 수행됨으로써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라는 취지임

■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을 갈음 할 수 있는 조건

- 또한,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업무처리절차 작성 없이도 각 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는 별도의 업무처리절차 작성 없이도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2. 업무처리절차 표준예시

※ 업무처리절차 예시는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 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가목)
- 일반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점검** 또는 **육안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또는 해빙기, 장마기간 등 공중이용 시설·공중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또는 안전 업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재해 예방 및 이용안전을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육안관찰**(수시점검)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이러한 점검·관찰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예시는 36p 참고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나목)

- 유해·위험요인 신고 또는 조치요구시, 시설관리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유해·위험요인이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등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를 확인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절차 예시>



-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추가 피해방지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다목)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조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
 - 경영책임자들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
 -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영책임자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경영책임자들, 관계행정기관 등에 보고함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절차 예시 >



4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라목)

- 시설물안전법 상 제1종 시설물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피훈련(비상대응계획 등)**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 대피훈련의 시기, 장소 및 훈련목표, 참여 범위와 시나리오, 대피훈련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대피훈련계획의 수정, 개선에 다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7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

※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는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1. 개념

■ 주요 의무사항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아래 두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 ① 수탁기관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 ② 수탁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 또한, 연 1회 이상 이 기준과 절차가 원활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2.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평가절차

-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운영 가능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각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3.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평가기준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교량, 터널 분야 예시 : 노면·교면의 포장 균열·손상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이용자에게 대한 이용제한 조치 등 업무
- 철도 분야 예시 : 차량운행에 필요한 부품 탈락 등 위험요인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부품 교체 조치,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 업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교육용 예시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공유 교육,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조치 등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 물품 예시 : 안전표지판, 안전삼각대, 비상탈출용망치, 안전경광봉 등
- 안전 장비 예시 : 차량 차체 진단장비, 철도차량 점검 특수 해머, 차량 수리·보수 리프트 점검·교체 장비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철도역사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설치 등
- 안전 관련 설비 설치 예시 : 철도차량 정비·점검을 위한 작업설비 설치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타법 사례: 안전관리비 계상>

- 공연장 사례: 공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1천명 이상 관람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

III.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1 의무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개념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연 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미이행 된 모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 ‘경영책임자가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했는지, 미이행된 조치에 대해 개선을 지시했는지’ 등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 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게 됨

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기준

- 안전보건관계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구체적으로는
 - 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②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 ③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구조체, 시설, 설비, 부품 등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
 - ④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는 법률 등을 안전·보건 관계법령으로 봄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구조안전, 이용안전, 화재안전 등이 아닌 **효율적인 이용, 원활한 교통흐름,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한 성능개선** 등 부가적인 목적을 가진 법령은 일반적으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요소 외에, **안전 외 목적을 위해 추가로 설치된 부대 시설, 공작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령도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3.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예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에 대하여는 해설서 29p~32p 참고

2 교육 이수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교육이 이수되도록 **연 1회 이상 그 이수여부를 점검하고**,
 - 교육이 이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교육 이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이 미이수된 모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 ‘경영책임자가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했는지, 미이수된 교육에 대해 이수토록 지시했는지’ 등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 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게 됨

2. 안전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 교육의 예시

■ 항공 분야 예시

- 항공분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위험물취급자, 승무원에 대해 실시함
- 항공안전법 제72조에 따라, 항공 분야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 항공안전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해당 항공기에 구비되는 구급용구 등 및 탈출대·비상구·산소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위험물취급자, 항공기 승무원 등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 교육이 이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교육 이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함



IV.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의무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3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중대시민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붙임.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이행사항		점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① 시설·설비 안전조치 업무 ② 시설·설비 유지보수 업무		안전인력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안전인력 업무점검 (문서화)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① 인건비 ② 시설·장비 확보·유지관리비 ③ 안전점검비 ④ 기타비용		안전예산 편성·집행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안전예산 집행 점검 (문서화)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① 정기안전점검 ② 정밀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진단		위험요인 도출/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위험요인 조치사항 확인 (문서화)	
4. 안전계획 수립·시행	① 인력확보 ② 안전점검 등 ③ 유지관리 ④ 안전예산 편성		안전계획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안전계획 이행점검 (문서화)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① 유해 위험요인 점검 ② 유해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③ 재해발생시 대응 ④ 비상대피훈련		업무처리절차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업무처리절차 이행성과점검 (문서화)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① 재해예방능력 평가기준 절차 ② 재해예방비용 기준		도급 등 기준과 절차마련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도급 등 이행성과점검 (문서화)	
7.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① 의무이행사항 점검 ② 미이행시 조치		관계 법령 의무사항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관계 법령 이행사항점검 (문서화)	
8. 안전관리자/종사자교육 시행 점검	① 교육이수점검 ② 미이수시 조치		교육대상자 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교육이수점검 (문서화)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1. 도로분야(국도·고속국도 등)
2. 철도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3. 항공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4. 하천분야(하구둑·제방·보)
5. 건축분야(업무시설 등)
6. 기타분야



1. 도로분야 (국도·고속국도 등)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 일반 사항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터널과 도로교량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됨

■ 의무이행 주체

- 사업주 또는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도로 교량, 도로 터널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설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도로교량·도로터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재해예방을 위해 도로교량·터널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 비용은 별도 관리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관계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점검 수행(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안전점검 수행(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안전조치 수행(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보수·보강 실시(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한 복구를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함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1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도로교량·터널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건축물 3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건축물 2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안전계획 수립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연 1회 이상 도로 교량, 도로 터널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안전계획 수립·이행 관련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6조)
 - 도로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설	안전계획	계획 내용
도로시설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 등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도로교량·터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 등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매년
		안전점검(제11조)	정기적(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제12조)	필요시 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제13조)	붕괴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제24조)	조치명령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6. 교육 이수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도로교량·터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1회 이상 직접 점검 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이행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 관련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교육
 - 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책임기술자)는 안전 점검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도로분야 기관 사례 (도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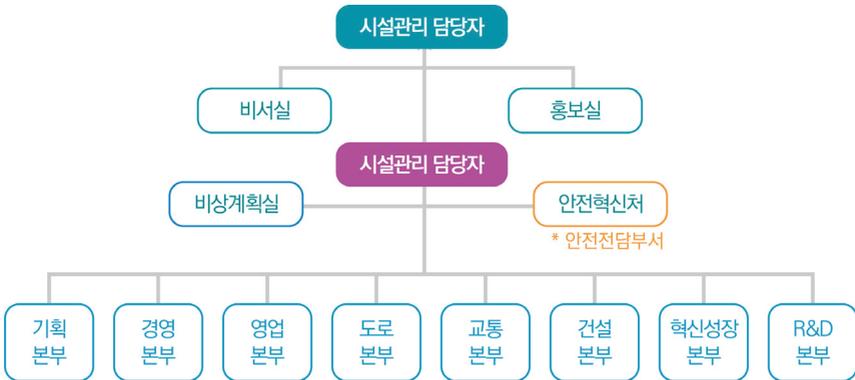
1. 기관 현황 ※ 출처 : 2020년 정부경영평가보고서(2020, 한국도로공사)

■ 업무 현황

- **주요업무**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등
- **설립연도** 1969년

■ 조직 현황

- **안전조직** 안전전담부서는 안전혁신처이며, 부사장 직속으로 운영



■ 안전인력

- **인력강화** 안전전담 인력 강화 61명(1,774 → 1,835명)
- **본사** 도로·건설·교통·시설물·재난등 안전 기획 업무 수행 9명 배치
- **지역본부** 교량·터널·비탈면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 전담 인력 보강 등(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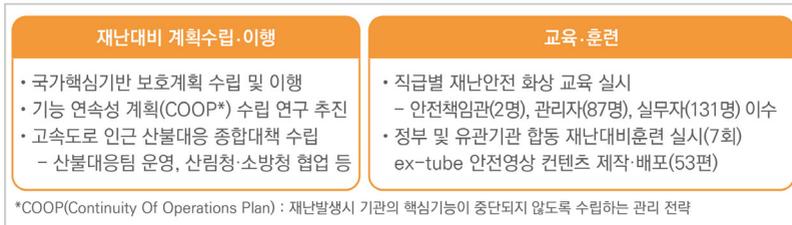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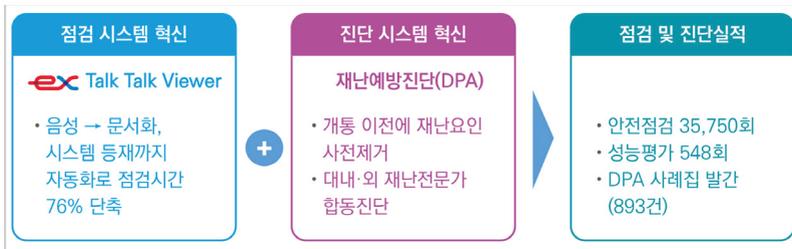
■ 안전예산

- **안전보건예산** 집중투자 전년대비 200억원 ↑ (1.35 → 1.37조원)
-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예산**(174억원 ↑)
-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관련 교육·홍보비용 등**(26억원 ↑)

2. 도로공사 재해예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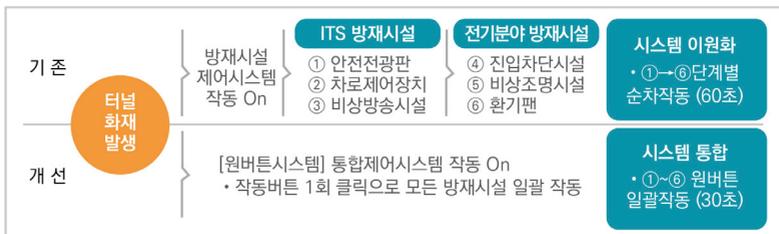
■ 사례1 : 재난사고의 선제적 예방 노력

- **추진내용** 재난안전 점검·진단체계 혁신 및 빈틈없는 재난대비 노력
- **추진성과** 점검·진단·대비노력으로 재난발생 감소(터널화재 18 → 8건)



■ 사례2 : 터널화재사고 대응시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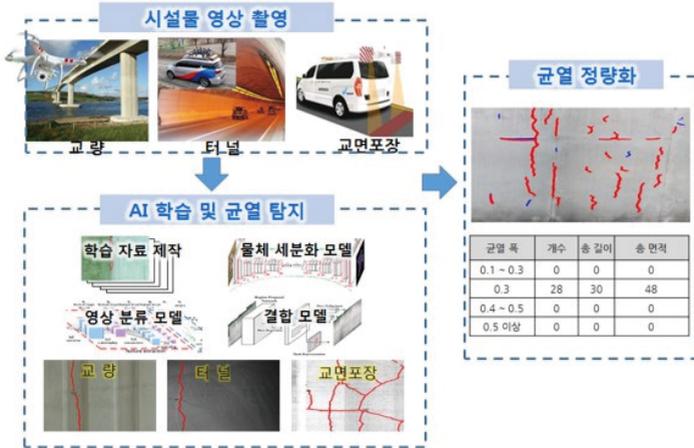
- **추진내용** 기존에 터널화재 발생 시 작동하는 방재시설 제어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원버튼 일괄작동으로 개선
- **추진성과** 터널 진입차단시설 작동 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414명 사고노출 위험 배제 효과



※ 출처 : 2020년 정부경영평가보고서(2020, 한국도로공사)

■ 사례3 : AI 기반 시설물 균열 자동탐지기술

- **추진배경** 구조물 관리수량 1만개, 노후화(30년 이상) 급증으로 인력점검 한계 발생
- **추진내용** 시스템 교통차단 없는 조사장비, AI기반 균열자동 분석
- **추진성과** 인력운용 절감(68.4억원) 및 시설물 점검 업무 효율성 12배 향상(인력점검 1시간/km → 자동탐지 5분/km)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조사 장비로 수집한 도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 시켜 균열 등 결함을 자동 탐지하도록 하는 'AI 기반 스마트 도로관리'로 공공기관 부문 대상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3 법 적용 사례

1. 도로교량 붕괴로 인한 시민 사망사고 (가상사례)

■ 사고개요

- 지방도 상에 균열이 있던 연장 500m인 도로교량이 붕괴되어, 해당 교량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낙하하여 운전자 1명 사망
※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A 지자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범위 붕괴된 교량은 시행령 제3조제2호(별표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②원인 도로교량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시설물안전법) 도로 노선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해 관리책임은 지는 A 지자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교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제11조)
 - (조사 내용) 안전점검이 적기 이행되지 않아 도로교량의 균열이 보수·보강 등 조치 없이 2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도로교량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A 지자체의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은 도로교량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했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 지자체장은, 관할 도로교량 등에 대해 안전점검의 이행상황을 2년째 보고 받지 않았고, 개선지시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 A 지자체(기관)에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안전점검 실시 지연)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A 지자체장(개인)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안전점검 수행 관리조치 미이행, 개선조치 미지시)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2. 도로터널 내 차량 연쇄 충돌 사고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가상사례)

■ 사고개요

- 4차로인 지방도의 터널 내부에서 이용자의 과속 운전으로 연쇄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화재로 일반 시민 2명이 사망
 - ※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B 지자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미충족**
 - ① **범위** 화재가 발생한 터널은 시행령에 제3조제2호(별표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② **원인**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유출된 차량 내부의 발화요인 등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조사(경찰 등)
 -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 공중이용시설인 **도로터널**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 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II. 철도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 일반 사항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터널, 철도교량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이 해당됨
-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철도차량이 해당됨

■ 의무이행 주체

- 사업주 또는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설물과 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들은 재해예방을 위해 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비용은 별도 관리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1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지하역사)

관계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수행(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점검 수행(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관계법령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조치 수행(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 • 시설물의 보수·보강 실시(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한 복구를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함 •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함
철도건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정기점검 수행(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함 • 긴급점검 수행(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정밀진단 실시(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 건축물 정기점검 수행(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함 • 안전진단 실시(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이행(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고조사 수행(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함

2 철도차량

관계법령	이행사항
철도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체계 수립(제7조제1항) -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소유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종사자 안전 및 직무교육 실시(제24조) -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소유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실시(제38조의12) - 철도소유자는 노후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철도시설, 철도차량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철도교량·터널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①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지하역사)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철도건설법(제29조, 제31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별 정기점검,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 주기
철도시설 (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 지하역사 등)	정기점검	시설별 별도주기 결정
	정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등급 : 6년마다 1회 • B·C 등급 : 5년마다 1회 • D·E 등급 : 4년마다 1회

-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6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역사 대합실 및 지하역사에 대하여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 주기
철도시설 (역사 대합실 지하역사 등)	건축물정기점검	•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안전진단	• 필요시

2 철도차량

● 철도안전법(제38조의 12)

- 철도차량 소유자 등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 주기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 운행 후 20년 내 1회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1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안전계획 수립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철도안전법(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안전계획 수립·이행 관련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50~52p)
 - 기 수립·추진 중이던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

시설	안전계획	계획 내용
철도시설 (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 지하역사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 등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 등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①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대합실/지하역사)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매년
		안전점검(제11조)	정기적 (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제12조)	필요시 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제13조)	붕괴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제24조)	조치명령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철도시설 관리자	철도건설법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제26조)	매년
		정기점검(제29조)	시설별 별도주기 결정
		긴급점검(제30조)	재난 발생 우려시
		정밀진단(제31조)	설치 후 10년 이후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건축물 정기점검(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건축물 안전진단(제16조)	필요시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제21조)	필요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이행(제22조)	점검결과 통보시
	사고조사(제46조)	사고발생시	

② 철도차량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
철도운영자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제7조제1항)	매년
		철도종사자 안전 및 직무교육(제24조)	5년 단위
철도소유자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2)	운영 후 20년

6. 교육 이수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이행 지시 등 교육 실시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철도안전법 제24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중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한 이용 등에 관계되는 사항을 이수토록 해야 함

■ 교육 관련 사항

- 철도안전법(제24조) :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실시
 -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철도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일반 • 철도시스템 일반 •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철도차량 중심) • 철도차량 정비 실무 •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강의 및 실습

※ 출처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철도안전교육의 내용>

교육내용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 수행 관련 사항 •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 •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강의 및 실습

※ 출처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2 철도분야 기관 사례 (국가철도공단)

1. 기관 현황 ※ 출처 :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1, 국가철도공단)

■ 업무 현황

- **주요업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설립연도**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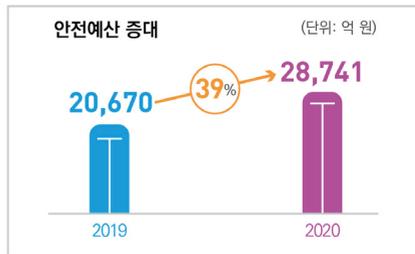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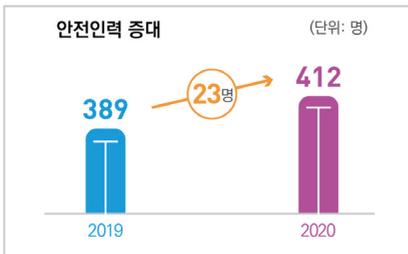
■ 조직 현황

- **안전조직** 안전전담부서는 안전본부이며, 부사장 직속으로 운영



■ 안전인력 및 예산

- **인력인력** 안전전담 인력 강화 23명(389 → 412명)
- **안전예산** 안전예산 증대 39%(20,670 → 28,741억원)



2. 국가철도공단의 재해예방 노력

■ 사례1: 예방·대응·복구 유기적 안전시스템 마련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추진배경** 대량 수송 기반의 철도 특성상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열차 운영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음
- **추진내용** 코로나19, 지진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복구 매뉴얼을 개정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코로나19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추진성과**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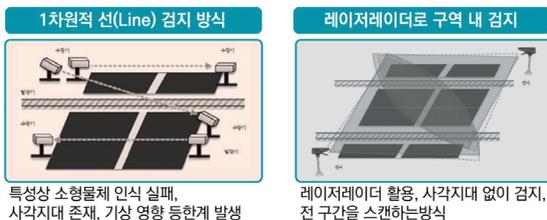
	중대시민재해 발생	초기·비상대응	수습·복구	피해 최소화
자연재난	재난으로 인한 철도시설 타격	· 재난대책본부 가동 · 피해복구·비상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조	· 응급복구·현장통제 · 피해현장 대국민지원 · 기관장 현장점검	· 열차운영 복구지원 → 조기운영 재개 · 대국민 피해 경감
사회재난	기관 내 감염병 밀접 접촉자·확진자 발생	· 재난대책본부 총괄 · 보건소 요청 외 2차 접촉자 선별·격리	· 모든 2차 접촉자까지 코로나19 선제적 검진 · 청사 긴급방역 실시	· 선제적 확산 억제 · 공단 숲 구성원 중 확진 총 1명

■ 사례2: 철도시설물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자살사고 예방

- **추진내용** 빈틈없는 개폐식 구조로 철도 승강장 안전펜스를 개량하여 역사(38개)에 설치하고 정차역(15개)에 승강장 안전문과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무단선로진입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 선로변을타리 추가 설치(270.7km), 레이저레이더 구역 검지 방식의 건널목 지장물 검지 장치 설치(25개소) 등 열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을 확충

- **추진성과** 다양한 철도시설물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사고 예방

<레이저레이더형 건널목 지장물검지 장치>



※ 출처 :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1, 국가철도공단)

3 법 적용 사례

1. 역사 천장의 낙하물로 인한 시민 사망사고 (가상사례)

■ 사고개요

- 천장 부근 균열(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철도역사 대합실에서, 천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시민 1명 사망
 - ※ (경영책임자) 철도역사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경영 일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거나**, 해당 철도역사의 **운영 사업에 대해 예산·인력 등 투입 권한이 있는 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모두 충족
 - ① **범위** 철도역사는 시행령에 제3조제2호(별표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② **원인** 철도역사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시설물안전법) 철도역사에 대해 관리책임은 지는 A공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역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제24·25조)
 - (조사 내용) 중대한 결함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지 않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A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철도역사의 안전점검 이행현황 등을 보고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공사의 경영책임자는 철도역사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중대한 결함이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 보수·보강 실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 A공사(기관)에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위험표지 미설치)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A공사 사장(개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의무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2. 철도차량 정비불량으로 인한 시민 상해사고 (가상사례)

■ 사고개요

-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 광역 철도차량의 주요부품이 파손되었는데, 이를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음

※ (경영책임자)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경영 일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거나,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운영 사업에 대해 예산·인력 등 투입 권한이 있는 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 **범위** 사고 철도차량은 법률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 ② **원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요부품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별도 보수·교체 등 없이 방치하여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철도차량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소유자등은 철도차량 제작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에 물리적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함(제38조의12)
 - (**조사 내용**) 법률에 따른 진단을 적기에 받았으며, 주요부품이 파손되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종사자나 이용자가 철도차량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조치요구, 보수·보강 등이 실시되도록 기관 내에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조사 내용**) 경영책임자는 유해 위험요인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자연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주요부품에 정비나 교체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공중교통수단(철도차량)의 파손 원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더라도,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파손 상황 등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이를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음



III. 항공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1 중대재해처벌법 재해

1. 일반 사항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등이 해당됨
-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송용 항공기가 해당됨

■ 의무이행 주체

- **공중이용시설** 공항청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설의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 **공중교통수단** 운송용 항공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항공기의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공항청사 또는 운송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재해예방을 위해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여객터미널 및 항공기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비용은 별도 관리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1 여객터미널

관계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수행(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점검 수행(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조치 수행(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

관계법령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보수·보강 실시(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한 복구를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함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정기점검 수행(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실시(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이행(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 수행(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함

② 운송용 항공기

관계법령	이행사항
항공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 의무보고(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증명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실시(제9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 관리지원 등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제9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기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원 등의 탑승 등(제76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제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위험물취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여객터미널, 항공기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여객터미널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① 여객터미널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6조)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 주기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건축물정기점검	•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안전진단	• 필요시

② 운송용 항공기

- 항공안전법(제90조)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공기 사고 등의 예방과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동 시스템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공기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영절차의 적절성을 지속 진단하고 보완하여야 함

관계법령	점검 사항
항공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58조) -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해야 함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안전계획 수립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운영·관리 하는 여객터미널이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 받음으로써 안전계획 수립·이행 관련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6조)
 - 여객터미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설	안전계획	계획 내용
여객터미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 등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여객터미널, 항공기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 등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 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① 여객터미널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매년
		안전점검(제11조)	정기적 (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제12조)	필요시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제13조)	붕괴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제24조)	조치명령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건축물 정기점검(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건축물 안전진단(제16조)	필요시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제21조)	필요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이행(제22조)	점검결과 통보시
		사고조사(제46조)	사고발생시

2 운송용 항공기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수립주기
항공운송 사업자,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소유주 등	항공안전법	운항기술기준 준수(제77조)	상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58조제2항)	운항시작 전/ 수시
		운항증명 및 안전운항체제 유지(제90조)	운항시작 전/ 수시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제32조)	상시
		무선설비의 설치·운영(제51조)	상시
		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제52조)	상시
		운항승무원의 비행경력(제55조)	상시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제56조)	상시
		기장 등의 운항자격(제63조)	상시
		운항관리사 배치(제65조)	상시
		승무원 등의 탑승(제76조)	상시
		승무원 교육(제76조제3항)	매년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제72조)	매년

6. 교육 이수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여객터미널, 항공기 등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이행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항공분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위험물취급자, 승무원에 대해 실시함

■ 교육 관련 사항

- 항공안전법(제72조)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항공안전법(제76조제3항)

- **교육대상**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
- **교육주기** 최초 교육 및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한번 이상 교육훈련 실시

※ 단, 위험물취급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24개월마다 한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요 교육내용**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해당 항공기에 구비되는 별표 15에서 정한 구급용구 등 및 탈출대·비상구·산소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2 항공분야 기관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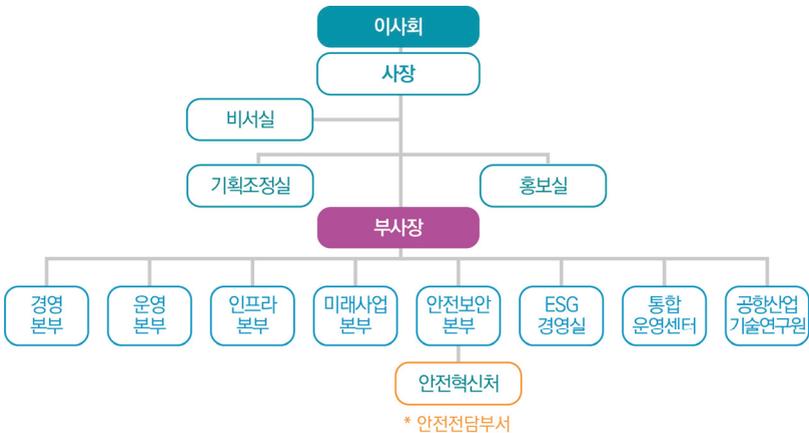
1. 기관 현황 ※ 출처 : 안전혁신 우수사례(2021, 인천국제공항)

■ 업무 현황

- 주요업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 설립연도 1999년

■ 조직 현황

- (안전조직) 안전전담부서는 부사장 산하 안전보안본부



■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인력** 공항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안본부에는 안전기획·조정, 재난관리, 산업안전, 소방안전, 항공보안, 테러대응 등 안전업무 전담 인력 412명 근무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전공자·경력자를 안전혁신처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안전예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을 기준(자회사 근로자 인건비 포함)으로 2019년 5,407억 원, 2020년 6,277억 원, 2021년 6,670억 원으로 매년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

2. 인천국제공항공사 재해예방 노력

■ 사례: CEO 주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인 국민안심(ANSIM, Airport Non-defect Safe & Innovative Management) 프로그램 마련

- 국민안심(ANSIM)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6개 분야, 131개 안전리스크를 발굴하여 CEO 주관 안전회의를 격주로 시행하여 리스크 집중 논의,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성
- 공사는 사장 직속의 안전혁신실을 신설하고,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운영을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대상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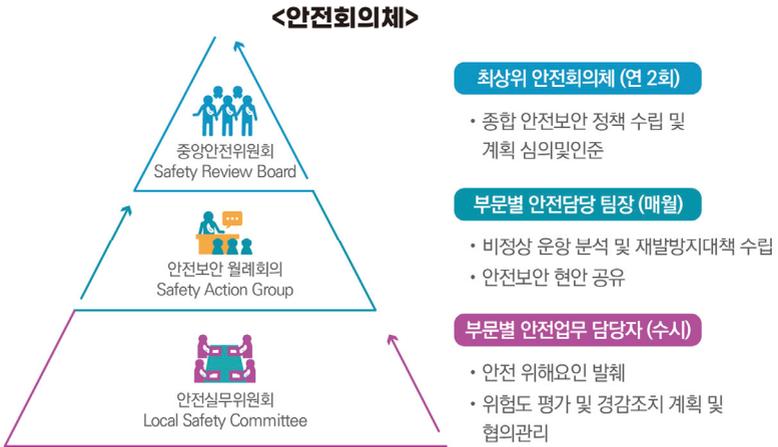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대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주관 국민안심(ANSIM)프로그램 도입 ▲안전관리 대상별산업안전 프로그램 도입·운영 ▲범공항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신기술 도입을 통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등 공사의 혁신적인 안전활동 추진성적을 우수사례로 발표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3 항공분야 기관 사례 (대한항공)

1. 대한항공 재해예방 노력 ※ 출처 : ESG 보고서(2021, 대한항공)

■ 사례 1: 체계적인 안전관리

- 신규 취항, 신기종 도입, 코로나19 등 운영환경의 변화로 인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지
- 2019년 9월 안전보안실 중심으로 운항, 객실, 정비, 종합통제, 여객, 화물 전 부문에 걸친 통합 변화관리 절차를 수립
 - 이를 통해 안전위해요인 식별과 위험평가, 위험 경감조치 모니터링 등 사고 재발 방지와 선제적 예방안전을 실현



■ 사례 2: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상 교육

- 새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 2년 후 보수교육을 제공.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제공
- 전 임직원 대상 법정 정기 교육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연 1~2회 정기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안전보건 의식 강화

■ 사례3: 운항 중 응급의료상황 대응 및 예방 체계

- 운항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적 응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의사 자문이 가능한 EMCS(Emergency Medical Call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에 심장충격기 등 다양한 비상의료기기 탑재
- 또한 기내 환자승객 발생 시 객실승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실제로 발생하는 환자승객 사례학습과 심폐소생술 훈련 실시
- 아울러 공항에서 환자승객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직원에게 질환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환자승객 항공운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4 법 적용 사례

1. A항공이 착륙 도중 기체결함으로 인해 추락 사고 (가상사례)

■ 사고개요

- A항공이 착륙 도중 기체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여 이용자 1명 사망, 5명 부상
※ (공중교통수단 소유자) A항공, (공중교통수단 운전자) A항공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 **범위** 추락한 항공기는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 ② **원인** 항공기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항공안전법) 항공기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A항공은 항공기 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제58조제2항)
 - (조사 내용) 항공기 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가 적기 마련되지 않아 항공기의 기체결함이 보수·보강 등 조치 없이 운항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항공기의 직접적인 추락 원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A항공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항공기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 되도록 조치했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항공 대표이사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고, 개선지시 등을 일체하지 않아 A항공이 항공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 **A항공(기업)**에는 항공안전법 위반사항(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미조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A항공 대표이사(개인)**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안전점검 수행 관리조치 미이행, 개선조치 미지시)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IV. 하천분야 (하구독제방보)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 일반 사항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물로서 하구독, 제방, 보가 해당 됨

■ 의무이행 주체

- 사업주 또는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하구독, 제방, 보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설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하천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시설물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하천시설물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비용은 별도 관리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관계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6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수행(제11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2조)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점검 수행(제13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조치 수행(제23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보수·보강 실시(제24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한 복구를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함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하천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하천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하천법(제74조)
 -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내용
하천시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 및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방·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등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제5조) : 안전점검
 -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의 홍수기 대비 및 피해상황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시설	점검 구분	점검내용
하천시설	정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이상 하천의 홍수기(6월21일~9월20일) 대비 및 피해상황 확인하고 점검결과 기록·유지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1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안전계획 수립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하천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운영·관리 하는 하천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안전계획 수립·이행 관련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6조)
 - 하천시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설	안전계획	계획 내용
하천시설 (하구둑, 제방, 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 등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하천시설물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 등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매년
		안전점검(제11조)	정기적 (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제12조)	필요시 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제13조)	붕괴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제24조)	조치명령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6. 교육 이수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하천시설물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이행 지시 등 교육 실시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하천분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은 하천법에 따라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해 실시함

■ 교육 관련 사항

- 하천법(제21조의2) :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하며,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2 법 적용 사례

1. 금강 제방의 사면유실로 인한 이용자 사고 (기상사례)

■ 사고개요

- 국가하천의 제방의 사면이 유실되어 산책중이던 이용자가 매몰되어 1명 사망
※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국가(소유자), 하천관리청(관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범위 유실된 사면의 제방은 시행령 제3조제2호(별표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②원인 제방 사면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시설물안전법) 제방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하천관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방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 위험표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제24·25조)
 - (조사 내용) 중대한 결함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지 않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하천관리청의 장은 제방의 안전점검 이행현황 등을 보고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하천관리청의 장은 제방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중대한 결함이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 보수·보강 실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 하천관리청(기관)에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위험표지 미설치)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하천관리청의 장(개인)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안전점검 수행 관리조치 미이행, 개선조치 미지시)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V. 건축분야(업무시설 등)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 일반 사항

■ 적용 대상(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와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따른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등이 해당 됨

■ 의무이행 주체

- 사업주 또는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어,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책임이 있고, 붕괴·화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을 의무 이행의 주체로 봄
- 구체적인 사례로, ○○법인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점유하여 ○○법인의 직원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 때,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을 하는 등 관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의무이행의 주체는 ○○법인의 경영책임자임
- 다른 사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이 때,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임차인의 사업으로 인해 해당 장소·시설·설비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보강할 의무를 지는 등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임차한 공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단, 임대차 계약 관계라고 해서 항상 임차인이 해당 장소·시설·설비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한 공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여전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임차인이 단순히 임대인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도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적용 될 수 있음

2.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재해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 다만, 기업 또는 기관별로 운영·관리하는 건축물의 유형·규모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개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함

※ 기업,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위탁비용은 별도 관리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관계법령	이행사항
시설물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6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수행(제11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2조)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점검 수행(제13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안전조치 수행(제23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보수·보강 실시(제24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의 발생에 대한 복구를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긴급보수·보강 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함

관계법령	이행사항
초고층 재난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재난 및 테러 등 교육·훈련 실시(제14조)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제16조)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및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제18조) -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함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시(제12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정기점검 수행(제1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실시(제16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제21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이행(제22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 수행(제46조) - 건축물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함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1 건축물을 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안전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조치하여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을 안전등급 및 공공 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제13조, 제16조)

정기점검(제13조)	안전진단(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목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 •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 시작일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주체) 건축물관리자 • (점검시기)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점검내용)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 • (점검방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실시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1 경영책임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었는지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안전계획 수립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 안전 점검의 실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운영·관리 하는 건축물이 시설물안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안전계획 수립·이행 관련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의무이행 사항 예시

- 시설물안전법(제6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설	안전계획	계획 내용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경영책임자의 점검 사항

- ① 경영책임자 등은 수립된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의무이행 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경영책임자 등은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의무이행 사항 예시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매년
		안전점검(제11조)	정기적 (D,E등급 경우,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제12조)	필요시 또는 등급별
		긴급안전점검(제13조)	붕괴등 발생 위험시
		긴급안전조치(제23조)	긴급조치 필요시
		시설물의 보수·보강(제24조)	조치명령 시 등
		위험표지의 설치(제25조)	긴급보수·보강 필요시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	초고층재난 관리법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재난 및 테러 등 교육·훈련(제14조)	매년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제16조)	건축시
		피난안전구역 설치(제18조)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건축물 정기점검(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건축물 안전진단(제16조)	필요시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제21조)	필요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이행(제22조)	점검결과 통보 시
		사고조사(제46조)	사고발생시

6. 교육 이수여부 점검

■ 경영책임자의 의무

- 경영책임자 등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하위 규정(행정규칙, 기준 등)을 포함함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이행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축분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은 초고층건축물의 업무시설인 경우,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

■ 교육 관련 사항

- 초고층재난관리법(제14조) :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교육

-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하여 함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 상황 보고·신고 및 전파 •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 포함)의 대피 유도 •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 •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 •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 •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으로의 대피요령 •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등

※ 출처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2 법 적용 사례

1. 내화구조부 불법 변경한 업무시설의 화재 사고 (가상사례)

■ 사고개요

- 업무시설(민간, 연면적 3,000㎡ 이상) 내화구조부 불법 수선·변경한 시설 화재로 이용자 2명 사망, 2명 부상
※ (업무시설 소유자) A회사, (관리자) B회사(「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 A·B회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충족
 - ①**범위** 업무시설(건축물)은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2)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②**원인** 건축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
 - ③**재해규모**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건축물관리법) B회사(관리자)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등을 건축법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 (조사 내용) 업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적기 이행하지 않아 내화구조부 불법 수선·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등 보수·보강 조치 없이 2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조사됨**(경찰 등)
 - (중대재해처벌법) A회사의 경영책임자인 대표는 제3자(B회사)에게 도급·용역 위탁한 경우 업무시설 정기점검이 수행되도록 했어야 하고(시행령 제9조제3항),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회사 대표는 업무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B회사도** 건축법 기준에 따라 업무시설을 적합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 ☞ 건축물관리자인 **B회사**(기업)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사항(건축물 유지·관리 미이행)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 **A회사, B회사 대표**(개인)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정기점검 미수행, 건축물 유지·관리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Ⅶ. 기타분야

1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의 경우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이행사항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의 건축주, 건축물 관리자, 승강기 관리주체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아래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이행사항은 안전관리, 유지·관리, 정기점검, 사고조사 등임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건축물 정기점검(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건축물 안전진단(제16조)	필요시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 해체 조치(제21조)	필요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이행(제22조)	점검결과 통보시
		사고조사(제46조)	사고발생시

2 연안여객터미널

*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소재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이행사항

-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의 건축주, 건축물 관리자, 승강기 관리주체, 항만시설 소유자는 건축물관리법, 항만법 등에 의해 아래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이행사항은 안전관리, 유지·관리, 시설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임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제12조)	매년
		건축물 정기점검(제13조)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건축물 안전진단(제16조)	필요시
		건축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제21조)	필요시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이행(제22조)	점검결과 통보시
		사고조사(제46조)	사고발생시
항만시설 소유자	항만법	항만시설의 정기안전점검(제38조)	매년
		항만시설의 정밀정기점검(제38조)	필요시
		항만시설의 긴급안전점검(제38조)	필요시

3 연안여객선

* 연안여객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이행사항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책임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은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에 의해 아래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이행사항은 운항관리 규정 준수, 안전관리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여객선 안전점검 등임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내항여객운송 사업자	해운법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심사·유지(제21조)	상시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및 교육(제21조의5)	선임 후 3개월 내, 매년 1회 이상
안전관리책임자	해운법	운항관리규정 수립·이행 및 여객선 안전운항(제21조의5)	상시
운항관리자	해운법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운항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상태 확인, 안전운항 지도·감독)(제22조)	상시
선박소유자	선박안전법	건조검사 (제7조)	건조시
		정기검사(제8조)	최초 항해,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시
		중간검사(제9조)	정기검사 간
		임시검사(제10조)	필요시
		임시항해검사(제11조)	임시항해 필요시
선장, 기관장 운항관리자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출항 전 안전점검(제3,4조)	출항 전
선장, 기관장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운항 중 및 운항 후 점검(제3조)	운항 중, 운항 후
운항관리자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월례점검(안전관리책임자, 선장, 기관장 입회)(제4조)	매월 1회
운항관리자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노후여객선 특별점검(안전관리책임자, 선장, 기관장 입회)(제4조)	반기 1회
운항관리자, 유관기관 관계자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특별점검(제4조)	연 5회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정기감독(안전관리책임자, 선장, 기관장 입회)(제5조)	월간 지도·감독계획에 따라 수행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수시감독(안전관리책임자, 선장, 기관장 입회)(제5조)	불시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항관리자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운항관리규정이행상태 확인점검(제7조)	연 1회, 사고발생시 수시
지방해양수산청장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운항관리자 지도·감독(제22조)	분기 1회

4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 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이행사항

- 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관리주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아래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요 이행사항은 안전관리, 유지·관리, 정기점검, 교육, 사고 보고 등임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유원시설 사업자	관광진흥법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상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제33조)	허가전검사(설치 전), 정기검사(반기·1년), 재검사(필요 시)
		유기기구 안전점검(제34조)	매일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제33조)	상시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제33·34조)	2년
		중대사고 보고(제33조의2) 영업질서 유지 등(제34조)	사고 발생시 상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교육

- 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관리주체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아래의 안전검사 및 점검, 교육을 이행하여야 함

이행주체	이행사항		
	관계법령	이행내용	주기
유원시설 사업자	관광진흥법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검사(제33조)	허가전검사(설치 전) 정기검사(반기·1년), 재검사(필요 시)
		유기기구 안전점검(제34조)	매일 1회 이상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제33·34조)	교육일로부터 매 2년마다
		유기기구 운전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제34조)	주 1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발행일 2021년 12월

기 획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국장 권혁진)

제 작 시설안전과장 강철윤,
사무관 이혜인, 주무관 박선주

해설서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사무관 이혜인	044-201-4848
	주무관 박선주	044-201-4596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사무관 이창엽	044-200-5738
	주무관 조용수	044-200-573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영미	044-203-2863
	주무관 김태형	044-203-286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사무관 김웅수	044-203-4224
	주무관 유재훈	044-203-422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